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경화 (외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0.05.26. 일부조항이 개정된 재외동포재단법이 공포되었으며, 개정된 동 법 제21조(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)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바, 하위법령 제때 마련을 위해 동 시행령 개정 필요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(안 제11조) 관련 세부사항 규정

- 1) 일부조항이 개정된 재외동포재단법(제21조)에서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변경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.
- 2) 기존 시행령에는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, 개정 시행령안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자료 제출 시기를 명시함.
- 3)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예산 분야 지도·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재외동포재단 등과 합의되었으며, 법제처 권고에 따라 일반
국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 변경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2호 중 “추정대차대조표”를 “추정재무상태표”로 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중 “추정대차대조표”를 “추정재무상태표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2호 중 “대차대조표”를 “재무상태표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시달”을 “전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정부의 출연금) ①·② (생략)	제7조(정부의 출연금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③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연도의 <u>추정대차대조표</u> 및 손익계산서	2. ----- <u>추정재무상태표</u> 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) 재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1조(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추정대차대조표</u> 및 그 부속 명세서	1. <u>추정재무상태표</u>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</u>

	<u>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제12조(결산보고) 재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	제12조(결산보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당해연도의 <u>대차대조표</u> 및 손익계산서	2. ----- <u>재무상태표</u> ----- -----
3.·4. (생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업무지침)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지도·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지침을 정하여 <u>시달</u> 할 수 있다.	제13조(업무지침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달</u>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외교부 재외동포과	
연 락 처	(02) 2100 - 7573